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--|------|
| 의 안 번 호 | 1493 |
|------------|------|

2016년 12월 20일
교육위원회

I 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6년 11월 4일, 문형주 의원
2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8일
3. 상정일자

-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1차 교육위원회
(2016년 12월 20일 상정·원안가결)

II 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문형주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중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하여 조성되는 수입은 실질적으로 “전출금”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므로 동 기금의 조성재원의 명칭을 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조성재원 중 “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”을 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”으로 함(안 제3조제2호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4일 문형주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93호로 발의되어 2016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 재원의 명칭을 “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”에서 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”으로 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설립 및 제주연수원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 따른 기금을 설치·운용하고 있으며
동 기금의 조성재원은 동 조례 제3조에 따라 ‘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대금’(제1호)과 ‘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’(제2호), ‘기금의 운용수익금’(제3호) 및 ‘그 밖의 수입금’(제4호)으로 마련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그러나 동 조례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’ 중 ‘출연금’이란 용어는 특별회계에서 진출된 기금재원을 타 지방

자치단체나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오해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왔습니다.

- ‘출연(出捐)’의 사전적 의미는 ‘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’¹⁾로 정의되어 있으며,

「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」(행정자치부, 2015.7.)에서도 ‘출연금’은 ‘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’로 세출항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
- 또한 법제처에서도 정부 등 주체를 기출하고 기금으로 재원을 이동하는 경우 ‘출연금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,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로부터 기금으로의 재원이동인 경우에는 ‘전입금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²⁾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동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.

- 따라서 동 조례에 따른 기금 조성은 교육청의 재산상 손실 및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, 서울시교육청이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가 아닌 자체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 재원을 의미하는 바,

동 조례안과 같이 “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”을 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”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, 불명확한 법적용어의 사용에서 오는 혼선을 방지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.

1) 네이버 국어사전(<http://krdic.naver.com/detail.nhn?docid=38058700>), 2016.12.12.

2) ‘알기쉬운 법령입안상식’, 법제(2003.3) 116쪽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제2호 “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” 을 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제1호 “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” 을 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” 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제3조(기금의 조성)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3.~4. (생략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| <p>제4조(기금의 조성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.~4. (현행과 같음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1항 중 제1호 “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”을 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”으로 한다.</p> |